

● 소송업무규정(0211)

제정 1998. 1. 1. 규정 제 18호	개정 2008. 1. 16. 규정 제274호	개정 2014. 4. 21. 규정 제442호
개정 1999. 2. 24. 규정 제 52호	개정 2008. 12. 18. 규정 제290호	개정 2014. 8. 21. 규정 제450호
개정 2004. 4. 20. 규정 제141호	개정 2009. 2. 23. 규정 제302호	개정 2016. 10. 27. 규정 제504호
개정 2005. 12. 27. 규정 제193호	개정 2009. 4. 28. 규정 제322호	개정 2017. 3. 23. 규정 제515호
개정 2006. 3. 16. 규정 제200호	개정 2010. 4. 15. 규정 제347호	개정 2020. 12. 22. 규정 제605호
개정 2006. 10. 26. 규정 제211호	개정 2012. 6. 25. 규정 제392호	개정 2020. 12. 22. 규정 제605호
개정 2006. 12. 19. 규정 제212호	개정 2013. 6. 20. 규정 제422호	개정 2021. 10. 20. 규정 제639호
개정 2007. 7. 19. 규정 제255호	개정 2013. 9. 26. 규정 제431호	개정 2022. 4. 15. 규정 제65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소송의 효율적 수행과 소송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4.4.20>

1. “소송”이라 함은 공사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소송(가압류가처분 포함)을 말한다.
2. “송무담당부서장”이라 함은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장”이라 함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5. “소송보조자”라 함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직원을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모든 소송사건은 사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소송의 수행과 그 지휘감독, 기타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과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운용에 관한 업무는 송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09.2.23>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 를 거친 후 사건경위 및 제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소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능률향상과 사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하되, 공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임전결규정에 불구하고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08.12.18>

제 2 장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제4조(법률고문) ① 공사에 약간 명의 법률고문을 둔다.

②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및 변호사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며, 공사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99.2.24>

③ 법률고문의 임기는 공사회계년도와 같이 하되, 연도 중간에 위촉한 경우의 임기는 연도 말에 종료한다. 다만,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종료시로 한다.

④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법률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06.12.19>

⑥ 법률고문의 선정·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13.9.26>

제5조(소송대리인) 공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경우 법률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정관 제 38조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4에 의한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08.1.16>

제6조(질의절차) ① 주무부서장은 소송과 관련된 사항 및 공사업무수행상의 법률적인 해석이나 의견제시자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고문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04.4.20>

② 주무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 특수성, 전문성 등을 고려 시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고문 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할 수 있다. <신설 13.9.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송무담당부서를 경유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3.9.26>

제 3 장 소송사무의 처리

제7조(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때에는 해당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공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서장이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본부장에게 제소결심을 받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7.3.23>

1. 소가 10억원 이상인 사건 <개정 17.3.23>
2.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개정 17.3.23>
3. 공사의 운영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개정 17.3.23>
4. <삭제 17.3.23>
5. <삭제 17.3.23>
6. <삭제 17.3.23>

② 주무부서장은 제소결심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7.3.23>

1. 제소 계획보고 <개정 17.3.23>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개정 17.3.23>
3. 소송물가액 및 당사자 <개정 17.3.23>
4. 경위서 <신설 17.3.23>
5. 증빙서류 <신설 17.3.23>
6. 기타 참고사항 <신설 17.3.23>

제9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사항을 송무담당부서장이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공사의 운영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사장이 결정한다. <개정 14.4.21>

1. 소의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법률고문의 의견

제10조(피소사건의 소장접수 및 응소)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법원으로부터 피소된 소장 접수 즉시 주무부서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14.4.21, 17.3.23>

② 피소된 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주무부서장이 결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4.4.21, 17.3.23>

1. 소가 10억원 이상인 사건
2.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3. 공사의 운영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③ 주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소된 소송사건의 소장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및 검토의견을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신설 14.4.21>

④ 송무담당부서장은 주무부서장으로부터 응소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소송제기여부 등 법리를 검토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의뢰한다. <신설 14.4.21>

제11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제소 및 응소결정 후 송무담당부서장은 제5조 및 법률고문 등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지체 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4.4.21>

② 소속사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

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은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송수행결과 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원이 소송대리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송무담당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2.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중 특히 가집행 선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입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전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문제점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소송보조자) ①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담당부장 및 담당자는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보조자가 된다. <개정 04.4.20>

② 보조자에게는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자의 직무) ① 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2. 필요시 변론기일,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서의 출석 또는 입회시 보고
3.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자가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송무담당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04.4.20>

제15조(보조자의 책임) 보조자는 제14조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직무를 해태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공사에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의2(소송협의체)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주요 쟁점사항 등의 검토 및 효과적인 소송대응을 위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소송 및 직무관련 사건
2.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사건
3. 기타 사건의 성격·내용 등 고려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소송협의체의 구성은 전·현 업무담당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 중에서 소송총괄부서장이 지명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송협의체는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이 소집·운영할 수 있다. <신설 13.6.20>

제15조의3(행정소송사건 보고의무 등)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 하거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경우 : 3일 이내 보고
2.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 3일 이내 수용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
3.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 7일 이내 수용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
4. 판결문(공사 승소)을 송달받은 경우 : 3일 이내 보고
5.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 3일 이내 항고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공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

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항소·상고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패소원 인분석표(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문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그 기한 전에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송무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2.4.15>

제 4 장 소송결과외 조치

제16조(승소판결 등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 있어 공사가 승소(소송비용확정결정 포함)한 때에는 판결 주문 등에 의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회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무담당부서장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09.4.28>

제16조의2(강제집행) ① 주무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채권행사 등을 위한 재판상 강제집행이 필요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 또는 공사의 가집행 판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강제집행에 필요한 상대방의 소재지 및 재산상태의 조사, 강제집행의 참여 및 지원 등 재판 외의 업무는 주무부서장이 수행한다.
[본조신설 04.4.20]

제17조(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패소 판결의 이유가 공사의 운영 및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4.4.21>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패소 판결로 확정된 경우 판결상 패소원인을 분석해야 하며, 패소원인이 관계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

다. <개정 14.4.21>

제18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관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임의변제) ① 금전급부 판결로써 패소로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②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
2. 판결문 정보(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포함)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합의서(별지 제7호 서식)

제20조(소송비용의 회수 및 지급 등) ①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 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판결확정 후 2개월 이내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송달 된 후 그 정보를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서장이 의견(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는 본부장의 승인 필요)을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16.10.27>

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 비용과 비슷하거나 소액인 경우
2. 다수당사자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3. 명도소송 제소 후 피고의 자진철거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부당이득금 포함)
4.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하는 경우
5.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거나 현

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전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주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3회 이상 소송비용 납부催告 등을 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필요할 경우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6.10.27>

③ 소송비용 등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서장은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는 본부장 승인 필요)할 수 있다. <신설 16.10.27>

④ 공사의 패소확정으로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그 확정결정문이 공사에 송달되면 소송총괄부서장은 그 정보를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며 주무부서장은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신설 12.6.25, 개정 13.6.20>

제20조의2(직무관련 형사사건 등) ①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 행위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붙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변호활동비로 심급별 1,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내에서 지원신청 할 수 있다. <개정 14.8.21, 17.3.23>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청구원인 사실이 직원 개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4.8.21>

③ 제1항의 경우에 직원이 공사와 같이 피소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직원의 변호활동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4.8.21>

④ 소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송무담당 부서를 관장하는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처장 중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임직원 직무수행 과정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고소(고발 포함)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부서장은 직접 고소(고발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시 송무담당부서장에게 고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13.6.20>

제21조(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사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07.7.19>

제 5 장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제22조(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소송의 수행에 있어 공사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수행사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포상금지급 범위 및 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은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당해사건의 소송수행사원(보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승소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공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 사원

제24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배분한다.

제2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3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26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민사 및 행정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사운영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표창)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할 수 있다.

제 6 장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제28조(증인 등의 실비변상)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이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0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 액은 사건 서류증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강제집행 보전 조치)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제소 및 응소 전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이 송무담당부서의 장의 협조를 얻어, 제소 및 응소 후의 경우에는 송무담당부서의 장이 각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0.4.15>

제33조(소송비용 등의 기준)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경우에 그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은 별표1 및 별표1-1의 기준에 의하여 소송대리인과 협의에 따라 지급하고, 별표1-1의 소송물 가액(소송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른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방침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04.4.20, 06.3.16, 12.6.25, 20.12.22>

1. 형사사건의 경우 <신설 04.4.20>
2. <삭제 20.12.22>
3.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소송업무가 현저히 복잡 또는 난해한 경우 <신설 04.4.20>
4. 판결결과가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설 04.4.20>
5. 그 밖에 관례 등에 비추어 기준금액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신설 04.4.20, 개정 20.12.22>

제34조(입금절차의 순위) 소송에 의한 채권 회수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이자, 원금의 순위로 입금처리 하여야 한다.

제35조(결손처분) 각 주무부서의 장은 강제집행 불능사건에 관하여 장래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소멸, 시효완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사건기록) 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일반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소송문서는 그 사건 기록에 편철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21.10.20.>

② 사건기록은 매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용회수 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

③ 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되 원본안과 상호 관련 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사건기록은 파일에 의하여 편철하되 색인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매장마다 면수를 표시 후 목록을 기입한다.

부 칙<98. 1. 1>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2. 24>

규정은 199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4. 20>

이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12. 27>

이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3. 16>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10. 26>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 10. 31 이전에 위촉된 고문번호사인 경우에는 2007. 1. 1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07. 7. 19>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 16>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2. 18>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2. 23>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4. 28>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4. 15>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6. 25>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6. 20>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4. 21>

이 규정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8. 21>

이 규정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10. 27>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12. 22>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전 모든 소송 문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2. 4. 15>

【별표1(제33조와 관련)】 <개정 04.4.20, 05.12.27, 06.3.16, 06.10.26 09.4.28, 12.6.25, 20.12.22>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 수 금

구 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	
	사 건 별	착 수 금		
민사 및 행정 소송	가. 신청사건		○ 청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론있는 경우: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1 이하 ○ 변론없는 경우: 50만원 이하 			
	나. 본안사건	(1)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 200만원이내 ○ 행정 - 250만원이내 	○ 청구서 ○ 소가증명원
		(2)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1] 수임변호사 착수금 산정기준(명도소송은 300만원 이내)	
다. 환송심 (또는 동일목적물에 대한 재소송 또는 재심사건을 동일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이내		

2. 승 소 사 례 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서의 구 비 서 류
<p>가. 당해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판결을 받은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나. 인락·소취하(쌍방취하, 소취하간주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변론준비기일 포함)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다. 중재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라.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용에 의한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 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은 당해 사건의 총심급 승소사례금을 합산하여 심급 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3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마.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중인 때에 수입변호사가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바.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사건확정 증명원 ○ 소취하서중 해당서류

3. 기 타 비 용

지 급 기 준	구 비 서 류
<p>가. 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p> <p>나.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p> <p>다. 검 증 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p> <p>라.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p> <p>마. 증인여비 :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3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등 납부명령서중 해당서류

【별표1-1(제33조와 관련)】 <신설 04.4.20, 개정 12.6.25, 20.12.22>

수임변호사 착수금 산정기준

소송물가액 (당해 소송심급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	산 정 기 준
2,000만원 이하	100만원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10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2,000\text{만원}) \times 8/100 \times 1/2]$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22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0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2]$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37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억원}) \times 4/100 \times 1/2]$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7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억5천만원}) \times 2/100 \times 1/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52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2\text{억원}) \times 1/100 \times 1/2]$
5억원을 초과하여 50억원까지 부분	$[67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text{억원}) \times 0.5/100 \times 1/2]$
5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7,950,000원

소 송 기 록 대 장

신청	
본안	

사건명	사건번호	주무부	소 장			199	방침결 정	내용	
			접수일	신청인	피신청인			변론 상황	대리인선임일: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	신청인 대리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변론 상황	대리인선임일:	결과 및 조치	
제 1 심	사건번호	원고	원고 대리인	피고	피고 대리인	변론 상황	대리인선임일:	결과 및 조치	
제 2 심	사건번호	항소인	신청인 대리인	피항소인	피항소인 대리인	변론 상황	대리인선임일:	결과 및 조치	
제 3 심	사건번호	상고인	상고인 대리인	피상고인	피상고인 대리인	변론 상황	대리인선임일:	결과 및 조치	
청구요지						비고			
사건개요 (피소원인)									

※선고일, 판결주문, 판결문 수령일 등을 결과조치란에 기입
 ※승인사항, 수입료지급, 강제집행등 사항은 비고란에 기입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소직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송업무규정 제14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건 명

원 고

피 고

200 년 월 일

서약서 소 속

직 명

성 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 구 서

일금

원정

원금

원

이자

원

법원

호

사건 (원고

, 피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관하여(가집행 선고부, 승소 확정) 판결에 의한 위 금액을 정히 청구함

20

년

월

일

위 청구인 : 성 명
(원고) 본 적

주 소

위 청구인 : 성 명
(대리인) 주 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합 의 서

원 고

피 고

위 양인은 법원 호 사건에 대한
판결금 원중 원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위 판결금 원중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이나 전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원 고 (인)

피 고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8호(제20조의2 관련) 서식】 <신설 14.8.21>

확 약 서

- 소 속 :
- 직 급(위)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는 직무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상기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송업무규정에 따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법률지원에 동의하며,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로 청구원인 사실이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 일체를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제15조의3과 관련)] <신설 22.4.15>

패 소 원 인 분 석 표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대리인/소송보조자		
사건개요		
주요쟁점		
변론진행 상황		
공사 주장사실		
상대방 주장사실		
공사 증거 및 증거요지		
패 소 원 인	사건의 성질상 패소	
	하자있는 행정처분	
	판례배치 행정처분	
	법령개정	
	증거멸실	
	법령해석의 견해차이	
	사실인정의 견해차이	
	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주장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정	
	증거제출 부적정 또는 미흡	
	상대방 주장 ·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기 타	
구체적인 패 소 원 인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 조치		
참 고 사 항		